

경동치과기공연구소 규정

(소관부서 : 경동치과기공연구소)

제정 2013. 02. 28

제1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부설 “경동치과기공연구소”(이하 연구소)라 칭하고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첨단화 시대에 발 맞춰 치과기공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과 함께 치과기공 이론 연구 및 새로운 치과기공 기자재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치과재료 및 기자재 연구개발 사업
2. 교육훈련 사업
3. 치과보철 및 장치물 제조평가 사업
4. 국내외 학술협력사업

제4조 (조직) ① 연구소는 소장, 감사, 운영위원회, 간사, 교육훈련부, 연구개발부, 관리운영부 및 연구지원부를 둔다.

②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교육훈련부는 치과기공학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치과기공사 등 치과 관련인들에게 제공하거나 교육훈련 시킨다.
2. 연구개발부는 치과기공에 가장 적절한 치과재료 및 기자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3. 관리운영부는 연구소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4. 연구지원부는 연구소의 운영경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제5조 (연구원) ① 연구소에는 1인 이상의 상임연구원과 약간의 객원연구원을 둔다.

② 상임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③ 객원연구원은 치과재료학의 연구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로 운영 위원회의 의결과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연구원, 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 전문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, 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,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자격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6조 (임원)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연구소장 : 1명
2. 감 사 : 1명
3. 간 사 : 1명
4. 부 장 : 각 1명

② 소장은 학과장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소장은 연구소를 대

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감사는 학과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④ 각 부서의 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⑤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위촉한다.
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사업 계획 및 예결산
2. 운영내규의 제정 및 회계
3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4. 연구계약 체결
5. 객원연구원의 임명과 위촉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 (특별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특별위원으로 추천하고 소장이 위촉한다. 특별위원은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.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촉시 정한다.

제9조 (보고) 연구소장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한다.

1. 연구소 운영 보고서(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) - 다음해 3월말까지
2.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 1월말까지
4. 연구 계약체결 현황 및 연구비 수혜상황 - 수시

제10조 (재정) ① 연구소 운영경비는 산학협동연구비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.

제11조 (연구비 및 관리비) ①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한다.

제12조 (운영세칙)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조 (규정개정) 본 연구소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
제2조 (준칙)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제3조 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